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 제도를 마련함(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).
-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, 재심사 기간 연장시 통지 의무를 규정함(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).

II. 검토의견

-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띄어쓰기를 교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김 성 완)